

투표 법안-E



E Westminster시, Westminster 안전, 서비스 안정화 법안

911 응급 대응, 경찰, 인근 순찰, 약물/갱단/가정 폭력/인신매매 조직, 소방관, 응급의료진을 포함한 서비스의 미래 삭감을 회복/방지; 공원/공공장소를 안전하게/깨끗하게 유지; 노숙자 문제 해결; 지역 식수 공급 보호; 지역 비즈니스 유지 등의 Westminster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권자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일반 정부 사용을 위해 매년 \$8,000,000를 제공하고, 감사, 지출 내역 공개, 지역 통제 자금을 요구하는, 1/2센트(1/2%) 판매세를 설정하는 조례안을 채택해야 합니까?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YES)	반대(NO)
“찬성(Yes)” 투표는 제안된 거래 및 이용세(지방 판매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반대(No)” 투표는 제안된 거래 및 이용세(지방 판매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찬성	반대
Waylon Pettengill Westminster 경찰관 협회 회원 Michael Verrengia 은퇴 경찰관 Alex Hogan Little Saigon 사업주 Timothy Hogan Westminster 사업주 Jessica Lostanau 교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투표 법안-E

법안 E 전문
Westminster시

WESTMINSTER시
조례 2609호

WESTMINSTER시 지방 조례 제3편(세수 및 재무)에 제3.10장(2024년 거래 및 이용세)을 추가하는
캘리포니아, WESTMINSTER시 조례

WESTMINSTER시 시민과 시의회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제1항. **법 개정.** 제3.10장(2024년 거래 및 이용세)은 다음과 같이 Westminster시 지방 조례 제3편(세수 및 재무)에 추가된다:

“제3.10.005항. 단제.

본 장은 2024년 Westminster시 안전, 서비스 및 안정화 거래 및 이용세 조례로 정한다. Westminster시를 이하 “시”라고 칭한다. 본 조례는 시의 관할 구역에 적용된다.

제3.10.010항. 유효일자.

“유효일자”는 본 조례 채택 후 110일 이상이 지나 시작되는 첫 번째 분기의 첫 번째 날로, 아래에 기재된 채택의 날짜이다.

제3.10.020항. 목적.

본 장은 무엇보다도 다음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되며, 본 장의 조항들은 이러한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한다:

A. 그 목적으로 소집된 선거에서 세금 부과를 승인하는 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 투표할 경우 유효하게 되는 본 조례 조례를 시가 채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세수 및 과세법의 제2부 파트 1.6(제7251항부터 시작)의 조항과 제2부 파트 1.7 제7285.9항의 조항에 따라 소매 거래 및 이용세 부과.

B.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6에 수록된 요건 및 제한과 일관되는 캘리포니아주의 판매 및 이용세법의 내용과 동일한 규정을 포함하는 소매 거래 및 이용세 조례 채택.

C.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 행정부에서 온전히 실행 가능하고, 캘리포니아 주 판매 및 이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있어 캘리포니아주 조세 수수료 행정부가 따르는 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서 최소한으로 벗어난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하고 법안을 제공하는 소매 거래 및 이용세 조례 채택.

D.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6의 규정과, 최대한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고, 거래 및 이용세의 징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자의 장부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소매 거래 및 이용세 조례 채택.

제3.10.030항. 주정부와의 계약.

효력 발생일 전, 본 거래 및 이용세 조례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는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만약 시가 효력 발생일 전에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러한 계약 체결일 후 그해의 첫 번째 분기의 첫째 날이 효력 발생일이 된다.

제3.10.040항. 거래세율.

개인 유형 자산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본 조례의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지역의 소매점에서 판매된 모든 개인 유형 자산 판매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0.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제3.10.050항. 판매 장소.

본 조례의 목적을 위해, 모든 소매 판매는 판매된 개인 유형 자산이 소매상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 타주 목적지로 배송되거나 또는 타주 목적지 배송을 위해 일반 운송업체에 배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매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은 배송 장소와 관계없이, 주 판매 및 이용세 대상일 경우, 배송료를 포함해야 한다. 소매상이 주 내에서 영구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매 판매가 이뤄지는 장소 또는 장소들은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 행정부에서 기재하고 채택하는 규칙 및 규정하에 결정된다.

제3.10.060항. 이용 세율.

전술한 구역 내 저장,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본 조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소매상에서 구매한 개인 유형 자산의 시 내에서의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는 해당 자산 판매가격의 0.5% 세율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판매가격은 배송 장소와 관계없이 주 판매 및 이용세 대상일 경우 배송료를 포함해야 한다.

제3.10.070항. 주법 규정의 채택.

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와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6의 조항과 일관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의 모든 조항(제6001항부터 시작)이 여기에서 채택되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본 조례의 일부분으로 속하게 된다.

제3.10.080항. 주법 채택 및 이용세 징수에 대한 제한.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 규정 채택에 있어:

A. 캘리포니아주가 과세 기관으로 명명되거나 언급되는 곳마다, 이 시의 이름이 그를 대체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다:

- “주”라는 단어가 주 회계국장, 주 재무국장, 재무부 또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목 일부로 사용될 경우;
- 해당 대체의 결과가 본 조례의 관리 또는 운영에 수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 행정부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해서가 아닌, 시 또는 기관, 사무관, 또는 직원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 캘리포니아주의 외부 경계선을 언급하는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항들에서, 대체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 규정에 따라 이러한 판매, 저장, 이용 또는 기타 소비가 주 과세 대상이어서 달리 본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을 개인 유형 자산의 특정 판매, 저장, 이용 또는 기타 소비세에 대해 본 세금에서 면제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 해당 법규의 언급된 조항에 따라 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유형 자산의 특정 판매, 저장, 이용 또는 소비와 관련해 본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 세수 및 과세법의 제6701, 6702(마지막 문장에서는 제외), 6711, 6715, 6737, 6797 또는 6828항.

투표 법안-E

B. “시”라는 단어가 제6203항의 “이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소매상”이라는 문구 및 제6203항의 그 문구 정의에서 “주”라는 단어를 대체한다.

1. 지역구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소매상”은, 전년도 또는 현재 년도 동안, 개인 유형 자산의 본 주에서의 판매 또는 소매상 및 소매상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의 주 내 배송 판매의 총합산 매출이 오십만 달러(\$500,000) 이상이 되는 모든 소매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미국 연방 법전의 제26편 제267(b)항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해 양쪽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 한 당사자는 나머지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10.090항. 허가서 불필요.

세수 및 과세법 제6067항에 따라 소매상에게 판매 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본 조례는 추가 거래 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10.100항. 예외 및 제외.

A.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는 모든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에서 Bradley-Burns 통합 지역 판매 및 이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판매세 또는 이용세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거래세 또는 이용세 금액은 거래세 및 이용세 법안에서 제외된다.

B. 다음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은 거래세 금액의 계산에서 면제된다:

1. 본 주, 미국 또는 외국 정부의 법 승인 아래 항공기가 사람 또는 자산의 공용 수송기로 직접적 및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카운티 밖에서 주로 사용 또는 소비될 항공기의 운영자에게, 연료 또는 석유 제품이 아닌, 개인 유형 자산의 판매.
2. 판매 계약에 따라, 소매상 또는 그 대리인이 시 외 지점으로 배송하거나, 또는 그 지점의 화물 수탁인에게 보내기 위해 소매상이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시 외 지점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시 외에서 사용되는 자산의 판매. 본 항의 목적을 위해, 시 외 지점에서의 배송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차량법 제3부 제1장(제4000항에서 시작)에 따른 등록 대상 차량(사업용 차량 제외), 공공 유틸리티법 제21411항을 준수하여 허가된 항공기 및 차량법 제3.5부(제9840항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서류 미비 선박의 경우, 시 외 주소로의 등록 및 그 주소가 자신의 주 거주지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위중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구매자가 서명한 성명서; 그리고

b. 상업용 차량의 경우, 시 외 사업장 등록 및 그 차량이 그 주소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위중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구매자가 서명한 성명서.

3. 본 조례의 효력 발생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고정 금액으로 자산을 판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개인 유형 자산의 판매.

4. 본 조례의 효력 발생일 전에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산 판매가 지속되는 경우로 일정 기간 임대인이 고정된 금액으로 자산을 임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개인 유형 자산의 임대.

5. 본 조항의 부조항 (3) 및 (4)의 목적을 위해, 계약 또는 임대계약의 한 당사자가 통지와 함께 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무조건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계약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개인 유형 자산의 판매 또는 임대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C. 이 시에서 개인 유형 자산의 저장,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해 본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세가 면제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에서 관리하는 거래 및 이용세 조례에 따른 거래세 대상인 판매의 총매출액.

2. 항공기 운영자가 구매한 연료 또는 석유 제품 외에, 본 주, 미국 또는 외국 정부의 법에 따라 발령된 공공 편의와 필요성 승인 아래의 고용 또는 보상을 위한 사람 또는 자산의 공용 수송기로 직접적 및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영자에게 사용되고 소비된 구매품. 이 예외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세수 및 과세법 제6366항 및 제6366.1항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대한 추가 건이다.

3. 본 조례의 효력 발생일 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고정 금액으로 자산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4. 본 조례의 효력 발생일 전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임차인이 고정 금액으로 자산을 임차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일정 기간 자산 구매가 지속되는 임대계약하에 개인 유형 자산에 대한 소유 또는 권리 행사가 발생할 경우.

5. 본 조항의 부조항 (3) 및 (4)의 목적을 위해, 개인 유형 자산의 저장, 사용, 기타 소비, 소유 또는 권리 행사는 어느 한 당사자가 통지와 함께 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무조건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계약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개인 유형 자산의 판매 또는 임대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부조항 (7)에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소매상이 시 내로 물건을 배송 또는 배달하거나, 소매상의 시 내 사업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소매업자의 승인 아래 시 내의 대리인, 에이전트, 외판원, 직속원, 회사사 또는 개인을 통하여 주문을 요청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는 자산 판매에 참여하지 않는 한, 시 내에서 사업하는 소매상은 개인 유형 자산의 구매자로부터 이용세를 징수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7. “시 내에서 사업하는 소매상”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소매상이 포함된다: 차량법 제3부 제1장(제4000항부터 시작)에 따른 등록 대상 차량, 공공 유틸리티법 제21411항을 준수하여 허가된 항공기, 또는 차량법 제3.5부(제9840항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서류 미비 선박. 해당 소매상은 시 내에 주소를 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구매자로부터 이용세를 징수해야 한다.

D. 본 조례하에 이용세 대상인 사람은 모든 거래세를 그 세금에서 크레딧으로 받거나 또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지역구에, 또는 이용세 대상인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 자산의 사람에게 한 판매와 관련하여 세수 및 과세법의 제2부 파트 1.6에 따라 거래세의 의무를 진 소매상에게 지불한 거래세 환급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3.10.110항. 개정.

판매 및 이용세와 관련하여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에 대한 이 조례의 효력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수정, 그리고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6 및 1.7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수정 그리고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6 및 1.7에 대한 모든 수정은, 이러한 수정이 본 조례에서 부과되는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조례의 일부로서 자동 포함된다.

제3.10.120항. 징수 명령 금지.

어떠한 명령 또는 다른 법적 또는 동등한 절차의 주문 또는 영장도, 본 조례, 또는 세수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6에 따라 징수되어야 하는 그 어떤 세금 또는 세액의 징수를 막거나 명하기 위해, 주 또는 시 또는 주나 시의 공무원에 대해 소송, 조치 또는 절차를 발령할 수 없다.

제3.10.130항. 회계 책임 조항; 시민 감독 및 독립적 연례 재무 감사.

좋은 정부의 기본 원칙으로서 시민 참여를 장려하려는 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관되며, 본 조례를 채택한 결과로 징수된 세수에 관한 구체적인 시민 감독 및 재정 책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확립된다:

A. 독립적 연례 재무 감사. 본 새로운 일반 목적 수입원으로 창출된 금액과 세수 사용 방식은 독립 공인 회계사가 실시하는 시의 재무 운영에 대한 연례 감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시의 예산 및 전략적 계획 절차에 자금 사용 통합. 이 조례로 창출되는 예상 수입과 자금 사용안은 시 예산 및 전략적 계획 절차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기금의 우선 사용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제공된다.

C. 연례 커뮤니티 보고서. 조례로 창출되는 기금과 자금 사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가 매년 시의 모든 가구에 제공된다.

투표 법안-E



D. 연 2회 시민 감독 회의. 시의회에 의해 임명된 감독위원회는 매년 두 번 소집되어 법안으로 창출되는 세수의 사용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시 직원들은 또한 법안으로 창출된 세수와 그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하기 위해 회원들과 특정 브리핑을 요청하는 모든 단체와 회의할 수 있어야 한다.

E. 집행. 시의회, 시민 감시위원회, 시, 시의 직원, 또는 시의회 또는 시민 감시위원회의 의원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시의 권한을 무효화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10.140항. 수익금의 사용.

본 장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수익금은 시의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하고 합법적인 지방 자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분리 조항. 본 조례의 조항 또는 그것의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때, 본 조례의 나머지 부분 및 그러한 조항들의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절. 별도 수입원. 본 조례는 2022년 Westminster시 거래 및 이용세 조례(Westminster 지방자치법 제3.11장)를 개정하지 아니한다. 해당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1.0%의 세금은 본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0.5%의 세금과는 별도로, 추가이다.

제4절. 이전 세금. 이전 Westminster 지방자치법 제3.10장은 2022년 12월 31일에 자체 기한으로 만료되는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2년 Westminster 거래 및 이용세 조례를 채택한 유권자가 승인한 조례에서 이전의 제3.10장을 폐지한 바 있다.

제5절. 발효 일자. 이 조례는 시 거래 및 이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되며, 즉시 발효된다. 단, 이 조례에 의해 부과된 세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3C조 제2(b)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의 유권자 과반수가 해당 세금을 승인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아니하다. 승인될 경우, 본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은 본 조례의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발효된다.

투표 법안-E

공정 분석
Westminster시
법안 E

법안 E는 Westminster시의 0.5%의 거래 및 이용세다. 이 세금 유형은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 판매 및 이용세와 함께 징수되기 때문에 보통 “지방 판매세”라고 칭한다. 0.5%의 세금은 1-달러 구매에 대한 세금이 반-센트(0.5센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센트세”라고 칭한다.

Westminster시의 모든 주 및 지방 판매세의 합산 세율은 현재 8.75%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

판매 및 이용세:	
캘리포니아주에 의해 부과됨	6.0%
오렌지 카운티 교통 기금	0.25%
Westminster시	1.0%

유권자가 승인한 거래 및 이용세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0.5%
Westminster시	1.0%

새로운 세금은 이와 같은 기존 세금에 추가된다.

주법에서 어떤 판매 (그리고 다른 종류의 거래 및 사용)가 거래 및 이용세의 대상이 되는지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주 전역 판매세가 면제되는 구매는 거래 및 이용세도 면제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식품, 처방약 및 서비스 대금은 면세 대상이다.

세금은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 행정부에서 관리한다. 행정 비용을 제외한 세수는 시의 일반 기금에 예치되고 모든 합법적인 지정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세수의 지출은 시의회가 관내에서 통제한다. 세금은 연간 약 8백만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다음의 책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i) 세수는 독립 공인 회계사가 매년 감사한다.
- (ii) 제안된 세수 사용처는 시의 예산 및 전략적 계획 절차에 통합되며, 이러한 기금의 사용 우선권을 결정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iii) 법안으로 창출되는 수익과 기금의 사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가 매년 시의 모든 가구에게 제공된다.
- (iv) 시의회에 의해 임명된 감사위원회는 계속하여 매년 두 번 소집되어 법안으로 창출되는 수익의 사용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이 법안은 Westminster 시의회에 의해 투표에 부쳐졌다. 세금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이 승인되고 세금 징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승인해야 한다. 세금은 자체적으로 만료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미래에 세금을 폐지하는 투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세금을 폐지할 수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투표는 제안된 거래 및 이용세(지방 판매세)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승인하는 투표다.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는 제안된 거래 및 이용세(지방 판매세)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거부하는 투표다.

상기 설명서는 법안 E의 공정 분석입니다. 법안의 인쇄 사본을 원하시는 경우, 선거담당자 사무실에 (714) 548-3237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사본을 우송해 드립니다.

서명자/ 시 법무관, Westminster시

투표 법안-E

법안 E에 대한 찬성론

가족의 안전을 지키십시오--E에 찬성(YES) 투표 하십시오!

E에 대한 찬성(YES)은 **생명을 구합니다**. 지난해, Westminster 911 전화 건수는 125,000 건 이상이었으며 -다수가 응급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지역 소방관/구급대가 건강/안전 재해 및 의료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지역 자금을 제공합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Westminster 가족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지난해, Westminster에서는 672건의 강도와 절도 사건 - 약 400건의 차량 절도를 포함하여, 3,000건 이상의 범죄가 신고되었습니다.

주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Westminster의 갇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Westminster를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이웃 도시들처럼 범죄가 난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Westminster의 노숙자 문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에 문을 열 예정인 노숙자 보호소를 유지하며 노숙자를 방지하고 공공장소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직업 훈련, 정신 건강, 그리고 약물 남용 서비스를 포함한 노숙자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에 대한 찬성(Yes)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E에 대한 찬성(YES)을 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재산 범죄를 예방합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경찰 마약, 가정 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전담반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노숙자 또는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위한 경찰관 훈련을 개선합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Westminster가 자연 또는 의료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독립 시민 감독위원회, 공공 지출 공개, 그리고 독립적인 연례 재무 감사를 지속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법안 E 자금은 Westminster 내에 있어야 합니다. E에 대한 찬성(Yes)은, Westminster 납세자인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법안 E는 여러분의 주택 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며 식료품 또는 처방 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안전, 소규모 사업체 및 커뮤니티 리더들과 동참하여 -E에 찬성(YES) 투표 하십시오.

사실 정보 확인: Westminster-ca.gov

서명자/ Waylon Pettengill
Westminster 경찰관 협회 회원

서명자/ Michael Verrengia
은퇴 경찰관

서명자/ Alex Hogan
Little Saigon 사업주

서명자/ Timothy Hogan
Westminster 사업주

서명자/ Jessica Lostaunau
교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